

'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(과정2동사 취득)승인의견

의안 번호	8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0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'97년도 사업계획 추진으로 구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는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여 사업을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(단위:m², 백만원)

구분	계			토 지			건 물		
	건수	면적	추정금액	건수	면적	추정금액	건수	면적	추정금액
당초	2	859	750	1	128		1	731	750
변경	2	1,807.25	1,300	1	398.39	600	1	1,408.86	700

- ① 당초의 토지 추정금액은 건물 공동주택의 상가 추정금액에 포함됨.
- ② 변경의 토지, 건물매입 추정금액은 인근지 매매실례가격 및 공인중개사의 호가 가격임.

3. 관계법령
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, 동시행규칙제30조

4. 본 문

- '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: 따로 붙임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

관리계획변경계획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:m', 백만원)

구 분		'97. 상반기 (당초)			'98. 하반기 (변경)			합 계			비고
		건 수	수량	금 액	건 수	수량	금 액	건 수	수량	금 액	
취	계	토지 건물 기타	1 1 -	128 731 -	- 750 -	1 1 -	398.39 1,408.86 -	600 700 -	- - -	- - -	
	1. 매 입	토지 건물 기타	1 1 -	128 731 -	- 750 -	1 1 -	398.39 1,408.86 -	600 700 -	- - -	- - -	
	2. 교환으로 취 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득	3. 기타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처	4. 매 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5. 양 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분	6. 교환으로 처 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
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:㎡, 백만원)

구분	재산 종류	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	비고
			지목	소재지	수 량					
당초	소계	2			859(259평)	750				
	토지	1	대	괴정동 197-1	128(38평)	750	'97 2/4분기	괴정2동사 매입	북구 만덕동 265-8 임호성	
	건물	1	철.콘스	"	731(221평)					
변경	소계	2			1,807.25 (546.5평)	1,300				
	토지	1	대	괴정동 356-1	398.39(120.5평)	600	'98 4/4분기	"	사하구 괴정2동 356-1 강종길	
	건물	1	철.콘스	"	1,408.86(426평)					

※ 당초의 토지 추정가액은 공동주택의 상가건물 가격에 포함됨.

※ 변경의 토지,건물 추정가액은 인근지 매매실례가격 및 부동산공인중개사의 호가 가격임.

괴정2동사 변경 취득

1. 변경 취득이유

괴정동 197-1번지 주상복합건물내 동사를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간의 불신으로 착공이 불투명해지자,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10개단체 305명이 인명으로 괴정동 356-1번지에 동사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, 동사부지를 변경, 취득코자 함.

2. 취득대상 재산내역

(단위:㎡, 백만원)

사업명	구분	재산종류	소재지	면적	추정가액	취득시기	주관부서
괴정2동사 취득	당초	소계		859(259평)	750	'97 2/4분기	총무과
		토지 건물	괴정동 197-1	128(38평) 731(221평)	750		
	변경	소계		1,807.25 (546.5평)	1,300	'98 4/4분기	"
토지 건물	괴정동 356-1	398.39(120.5평) 1,408.86(426평)	600 700				

3. 사업개요

○ 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56-1

○ 추정가액 : 1,300백만원

※ 토지, 건물매입 추정가액은 인근지 매매실례가격 및 부동산공인중개사의 호가 가격인

○ 규 모

· 토지 : 398.39㎡(120.5평)

· 건물 : 지하1층, 지상1층~5층, 연면적 1,408.86㎡(426평)

- 사용용도 :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

- 신축년월일 : '92. 10. 13, 준공년월일 : '93. 5. 27

4. 관계법령

○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, 동시행규칙제30조

5. 재산의 위치 및 지적도 : 따로 붙임

위치 및 지적도

(괴정동 356-1번지 토지 398.39㎡, 건물 1,408.86㎡)

